

##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'가축·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'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1일

### 영 동 군 청

1. 목적 :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

2. 적용 지역 및 기간

적용 지역	적용 기간
1) 전라북도 토종닭·육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) 쭈올풀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	'23.2.23. 22시 ~'23.2.24. 22시 (24시간)

3. 대상 :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·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 이동 금지

가. 축산관련 종사자 :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
나. 축산관련 작업장 : 가금류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 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 시설, 축산 관련운반업체, 축산관련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 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

## 판매업체 등

### 4. 기타사항

- 가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
- 나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·차량·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
- 다.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·차량·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
- ※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
- 라. 일시이동중지는 2023. 2. 23. 22: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. 2. 24. 01:00부터 적용한다.

\* 육계(삼계·백세미 포함)에 한해 '23.2.24. 03:00까지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

마.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6. 문의처 : 영동군청 농정과(전화 043-740-3443, 3442),

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(전화 043-220-6343)